



의 안 번 호	제192호
회 의 연 월 일	2021. 12. 20. (제478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기획조정관)
제출연월일	2021. 12. 10.

법무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은 신설·강화된 규제 중 일몰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에 대하여 일몰 신규설정을 추진하고, 2021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경찰청 소관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법인 지정신청시 이중으로 제출해야했던 서류를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은 신설·강화된 규제 중 일몰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 조문 4건에 대하여 일몰 신규설정을 추진(안 제141조의2)

다. 일몰 조문의 순서를 인용조문의 순서에 맞게 변경(안 제141조의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의 일몰 규제심사를 마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1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41조의2제1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1조의2제1호의3을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1조의2제2호부터 제5의2를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 2022년 1월 1일

4. 제46조,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받은 자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 의무 교육 : 2022년 1월 1일

5. 제46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 2022년 1월
1일

7. 제91조, 별표 28에 따른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
지처분 기준 : 2022년 1월 1일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30일
------	------	----------	-----

신청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대행법인등)의 명칭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대행법인등과의 관계		
	주소		
대행능력	주차면적	견인차 대수	
견인지역			
비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

2.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3.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
동장치 승차정원 : 2022년 1월
1일

6.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7. 제91조, 별표 28에 따른 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2022년 1월 1일

5. 제46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 2

<u>2. ~ 5의2.</u> (생략) <u><신설></u>	<u>022년 1월 1일</u> <u>8. ~ 11.</u> (현행 제2호부터 제5호의2까지와 같음) <u>4. 제46조, 별표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받은 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20</u> <u>22년 1월 1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 3150 - 0330